

영국사례 1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거주지를 공개해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천요강 위반에 해당한다

- 불만제기인 : 한 여성 (신원 미공개)
- 인용된 조항 : 제7조 (아동 성범죄), 제11조(성추행 피해자)
- 언론사 : Falkirk Gerald

불만내용

성추행 피해자의 어머니인 신청인은 2009년 5월 14일자 「Falkirk Gerald」에 실린 기사가 실천요강 제7조(아동 성범죄)와 제11조(성추행 피해자)를 위반, 그녀의 딸이 성추행 피해자임이 밝혀지게 되었다며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에 불만을 제기했다. 기사는 한 소년이 피해자인 소녀와 불법적인 성관계를 맺었다

는 내용과 함께 범죄가 이루어졌던 장소를 상세히 보도했다.

불만제기인은 기사에 보도된 주소는 현재 자신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실제 주소이며, 이 때문에 딸 이름이 기사에 직접 공개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사를 읽은 사람은 누구나 성추행 피해자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딸이 임신한 사실을 공개한 것도 심각한 실천요강 위반이라고 말했다.

신문사는 피해자의 집 주소는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었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살았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고 불만 대상 기사는 피해자의 나이조차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문사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단서를 남겨놓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으며, 사과문을 게시할 의지도 있었다고 말했다.

결정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다.

평결

성 사건 관련 조항은 특별히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신문사가 기사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주의에 의한 것일지라도 신중

하지 못한 처사였다.

해당 기사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재된 주소가 그 소녀의 집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정확한 주소를 기사화한

것은 경솔하고 불필요한 행위였으며, 사건의 소녀가 임신한 사안을 공개한 것도 실천요강 위반이 명백하다.

PCC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불만

제기자의 딸이 그동안 많은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불만제기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결정한다.

2009년 6월 11일 평결번호 79

영국사례 2

PCC의 평결을 상당부분 누락한 채,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기사화한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

- 불만제기인: Natalie Cassidy,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 한 여성(신원 미공개)
- 인용된 조항: 제1조
- 언론사: Woman

불만내용

2008년 12월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는 Natalie Cassidy, Big Shot Productions, Universal Studios가 「Woman」을 대상으로 제기한 불만을 인용한 바 있다. PCC는 그러나 해당 잡지사가 실천요강에 따른 처분과 관련, 기사의 제목을 'PCC 권고'로 기재하지 않은 점과 기사를 뒤늦게 보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Cassidy는 자신의 다이어트 DVD 제작 당시 그녀가 규칙적으로 체육관을 다녔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으며, 관련 내용은 잡지가 비공개 취재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사화 한 것이다. Cassidy의 변호사는 그녀가 체육관에 다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Cassidy의 체중감량은 전적으로 DVD에 담긴 운동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PCC는 「Woman」이 보도 내용과 관련해 믿을 만한 출처를 밝히지 못했고, 그녀가 부인하는 부분에 대한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가 제1조(정확성)를 위반한 것

이라 결정했다. PCC의 제재내용은 2월 23일 판 잡지 30페이지에 'Natalie Cassidy'라는 제목으로 실렸으나, 평결내용의 반 이상이 누락된 상태였다.

「Woman」은 독자들의 관심이 사건에 분명하게 집중될 수 있도록, 제목을 'PCC의 권고' 대신에 'Natalie Cassidy'라는 제목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생략된 평결문의 대부분은 원문 기사에 대한 「Woman」의 자기 방어적 언급을 기술한 내용이었고, 이는 독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외형적으로는 PCC의 제재 사항이 불만대상이 되었던 기사의 절반 분량으로 실렸지만, 이는 관

런 결정에 응하는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Woman」은 PCC의 평결 뒤에 추가적인 문구를 삽입하여 자사가 불만을 받아 들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정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다.

평결

「Woman」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평결문의 편집은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잡지사는 관련 조항을 어긴 것에 대해 받는 불이익의 일부로서, PCC의 권고 사항을 전부 다 게시했어야 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최초 기사는 8~9페이지에 걸친 기사였다. 이에 반해 30페이지에 실린 PCC의 제재문은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며, 그 페이지의 나머지 부

분보다 더 작은 글씨로 게재되었다. 제재문의 제목에는 PCC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평결문도 편집되었다. 잡지사의 모든 행동은 용인될 수 없다. PCC는 제재에 대한 잡지사의 대응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PCC는 편집자에게 다음호 잡지를 발행 시 평결문 내용을 빠짐없이 넣을 것과 관련 기사가 두드러지게 게재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3월 13일 평결번호 79

호주사례 7

의견 기사에 사용되는 표현은 때때로 자극적이거나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도 내용에 잘못이 없는 한 이러한 내용이 실천요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 평결번호 1425

호주신문평의회(APC)는 칼럼니스트 Miranda Devine이 2009년 2월 12일 「Sydney Morning Herald」에 쓴 의견 기사와 온라인판 'Opinion' 및 'Environment' 면에 게재한 기사를 대상으로 Claire deLacey와 Steve

Chamberlain이 제기한 불만신청을 기각한다.

불만 대상 기사는 '환경 이상주의'에 기반한 삼림 관리체계가 수많은 식물군을 파괴하고, 동물 개체수를 줄어든게 만든 빅토리아 잡목림지대 산불의 주요 원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만제기인들은 기사가 산불

의 책임을 '환경 이상주의'로 돌리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며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으로 명백한 실천요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Sydney Morning Herald」는 불만이 제기된 내용에 대해 해당 기사들은 비극적인 빅토리아 산불을 "포괄적이고 균형

된”시각으로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Devine이 칼럼에서 사용한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전했다. 또 신문은 이미 Devine의 기사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편지글의 형태로 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기사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책임자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만제기자들은 신문사가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 또는 의견란 기고 등의 형식을 통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Sydney Morning Herald」는 변론을 통해 Devine이 쓴 일부 과장된 표현은 특정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생기 있고 독자들로부터 반향을 일으키게 하는’ 그녀만의 문체에서 기인한 것이며, 기사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PC는 ‘의견’ 기사에 표현된 관점과 논평들은 때때로 자극적이거나 뜨거운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번 사건 기사도 “300명 이상의 인명을 앗아간 산불의 원인이 기후변화나, 방화범이 아닌 ‘환경이상주의’”라는 다소 논란의 여지

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가적인 애도의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산불의 원인을 특정한 집단에 돌리는 것은 독자들의 감정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한다. 또한 주장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ydney Morning Herald」의 빅토리아 산불에 관한 보도와 논평의 문맥 그리고 그동안 신문사가 취한 행동을 볼 때, APC는 해당 기사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다.

2009년 6월 평결

호주사례 2

언론사에 보낸 이메일은 모두에 공개된 사실로 보아야 하며, 언론사가 이를 공개한 것은 실천요강 위반이라 할 수 없다

• 평결번호 1423

호주신문평의회(APC)는 남오스트레일리아 주 법무장관 Michael Atkinson이 「The Advertiser」, 「Adelaide」 및 인터넷「Adelaide

Now」가 게재한 기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불만신청을 기각한다.

Atkinson 장관은 동일한 주제를 다룬 두 기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으며, 불만 대상은 「Adelaide Now」가 게재한 ‘정부의 정치홍보

전문가(Spin-doctor)들, 검찰의 의견철회 사실 부각에 급급’ 제하의 기사와 「The Advertiser」의 ‘정부 정치홍보전문가들, 검찰 비난’ 제하의 기사이다. 기사는 남오스트레일리아 주 지방법원의 한

소송에서 검찰이 제출한 의견을 다루고 있다.

「The Advertiser」는 검찰이 재판 중 뺑소니 교통사고 관련 법이 의회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어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안의 초안을 마련한 담당자들에 대한 비판을 철회했다고 보도했으며, 검찰의 발언 내용은 법무장관 언론비서관이 “오늘 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을 오늘밤 뉴스에 포함시켜 달라”는 말과 함께 언론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Atkinson 장관은 기사가 언론

비서관의 개인적인 이메일의 많은 부분을 포함해 독자들이 그녀가 취한 행동에 대해 나쁜 인상을 받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며 언론비서관의 역할은 남오스트레일리아 주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언론에게 알리는 것이고 이는 하나의 공공서비스라고 말했다.

법무장관은 이메일 내용의 공개는 심각한 실천요강 위반이며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된 뉴스는 게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PC는 이 사건 기사가 실천요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 이메일이 언론사에 보내졌다면, 그 내용은 이미 공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불만내용의 본질과 관련해 APC는 기사가 일부 비방적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검찰의 의견 철회에 대한 정확한 내용에 기반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불만처리와 관련한 「The Advertiser」의 태도는 적절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The Advertiser」는 Atkinson 장관의 불만제기와 관련해 한 차례 편지를 보내긴 했지만,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되지 못했다.

2009년 5월 평결

뉴질랜드 사례

기사에 언급된 비용 관련 수치는 그 도출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 오해의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정정되어야 한다

사건번호 : 2070 AUCKLAND REGIONAL COUNCIL AGAINST NEW WEALAND HERALD

오클랜드 지방의회(ARC) 의

장인 Mike Lee는 「New Zealand Herald」가 오클랜드의 대중교통 통합발권시스템 운영비용에 관한 부정확한 기사를 보도했으며 신문평의회(PC)에 불만을 제기했다.

제기된 불만을 인용한다.

배경

2009년 2월 2일 「New Zealand Herald」는 1면에 ‘주요한 도시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했으며, ARC는 사업 실적에 관한 비상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기사

를 내보냈다.

그 기사는 1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시 주요 개발사업들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지방의회의 전략적 투자로 수익성을 유지하던 사업들의 사업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정치인, 사업관계자 그리고 ARC 참모들이 악화되고 있는 ARC 사업 실적에 대처하기 위해 금주 금요일 Auckland Regional Holdings 라는 비상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회의는 적대감 속에 중단되어 목요일에 다시 개최될 예정이며, 지주 회사들의 수입 역시 1억 7천만 달러가 소요되는 통합발권프로젝트의 운영비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기사는 ‘위기에 직면한 통합발권시스템’이라는 제목의 버스 사진과 함께 게재되었으며,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통합발권프로젝트 관련 의회제안서가 곧 고시될 것으로 보이지만, 오클랜드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만한 재정상의 여유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불만 내용

Mike Lee는 회의에 대한 설명과 1억 7천만 달러의 비용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New Zealand Herald」에 반론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회의가 있기 하루 전 날 자신을 인터뷰하였으며, 그는 기자에게 발권프로젝트에 상업적 민감성이 존재하지만, 대략 6천만 ~ 8천만 달러의 자본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한다.

기사가 보도된 날 Mike Lee는 기자에게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내, 1억 7천만 달러라는 수치 및 회의가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중단되었다는 표현들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기자는 당시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Mike Lee는 회신을 받지 못했다.

Mike Lee는 회의가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중단된 것이 아닌 만큼 이 사실은 당연히 정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편집자 앞으로 보냈다.

그러나 2월 10일 「New Zealand Herald」는 그의 편지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ARC의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통합발권시스템 계획은 부적절하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그는 「New Zealand Herald」의 편

집인 Tim Murphy와 비용 이슈를 논하고자 휴대폰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Mike Lee는 다시 편집인에게 편지를 썼고 이 편지 내용은 상당 부분 생략된 채로 2월 12일자 신문에 기사화 되었으며, 기사는 Mike Lee가 기사를 본 후 편집인에게 편지를 통해 통합 대중교통 발권시스템은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그 비용은 6천만 ~ 8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기자와 Mike Lee가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당시 편집인 Tim Murphy는 기사와 관련 Mike Lee의 이의제기가 있다는 어떠한 사실도 알지 못했으며, 그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바로 편집부로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담당 기자는 휴가 중이었으며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Tim Murphy는 담당기자가 Mike Lee와의 인터뷰에서 6천만에서 8천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얘기를 들은 바 있지만, 그가 기사에 쓴 수치는 ARC의 전체 비용을 언급한 것으로, 자본비용과 관리비용을 포함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비용 합계가 8천만 달러를 훨씬 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중앙 정부 계산’이며, Mike Lee의 비용 측정은 ARC의 비율만을 고려한 것인 만큼, 기사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Mike Lee가 언급한 수치가 자본비용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전체 비용을 말한 것이라면 명백하게 기사를 정정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Mike Lee는 PC에 「New Zealand Herald」의 2월 2일자 기사 중 “지주 회사들의 수입 대부분이 1억 7천만 달러가 소요되는 대중교통 통합발권프로젝트를 위한 운영비용으로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과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은 사업비용이 실로 거대하다고 말할 것이라”라는 부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논의

이 사건의 첫 번째 논점은 2월 2일자 기사를 읽은 합리적인 독자가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대중교통 발권통합프로젝트와 관련된 수치를 자본비용으로 받아

들이는지 아니면 자본비용과 운용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이해하는지에 있다.

해당 기사는 위 수치를 두 번 언급한다. 첫 번째는 ‘1억 7천만 달러 프로젝트의 운용비용에 대한 지주회사의 비용부담’이라는 부분에서, 두 번째는 ‘1억 7천만 달러 프로젝트의 성공적 제안’이라는 머리글에서다.

비록 운용비용이라는 말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1억 7천만 달러라는 수치가 자본비용과 운용비용을 모두 포함한 수치인지 불분명하다. 편집자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기에는 설명이 빈약하다. 편집자가 말한 것처럼 해당 기사는 1억 7천만 달러에 운용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1억 7천만 달러 프로젝트의 운용비용을 지주회사가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만을 보도할 뿐이다.

두 번째 논점은 1억 7천만 달러가 정확한 금액인가, 하는 부분이다. 교통청의 추정치로부터 계산된 편집자의 수치는 1억 7천만 달러에 못 미친다. 계산된 수치는 1억 5천만 달러에

가까운 것으로 기사 내용과 차이를 보인다. 편집자는 1억 7천만 달러가 인플레이션에 의한 비용 상승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사실은 기사에 언급되지 않았으며 독자들에게 이러한 추정이 계산에 포함되었음을 알렸어야 했다.

통합발권시스템에 대한 제안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아 아직 정확한 비용을 알 수 없었으며, 향후 10년에 걸쳐 발생하는 운용비용과 물가상승률은 추정치로 예상될 수밖에 없어 수치가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는 점은 누가보아도 명백하다.

언론사가 자본비용과 운용비용, 중앙 정부와 지방의회 사이의 비용의 분담관계에 대한 정보를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결정

수치가 부정확했다는 Mike Lee의 불만을 인용한다. 2월 2일자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해당 수치는 자본

비용만을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만약 자본비용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New Zealand Herald」는 해당 수치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설명했어야

했다. 내용이 일부 생략된 Mike Lee의 편지를 게재한 것으로 「New Zealand Herald」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독자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New Zealand Herald」는 첫 번째 기사에서 좀 더 신중하고 명확한 수치를 사용했어야 했다.

위원회 회의 : 2009년 5월

